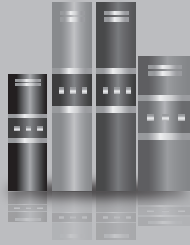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2.9.7]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5호, 2012.9.7,
일부개정]



【제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해당 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시적인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1348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을 위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의 유형을 가축운반 · 원유운반 차량 등으로 정하고, 등록된 차량은 무선인식장치를 차량 앞면에 장착하도록 하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시설출입차량의 위치정보나 방문일시 등의 차량출입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도록 하고, 일시적인 이동중지명령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제 · 개정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 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 ·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 ② 시설출입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 · 원유 · 동물약품 · 사료 · 가축분뇨 · 왕겨 · 퇴비의 운반이나 진료 · 인공수정 · 컨설팅 · 시료채취 · 방역 · 기계수리 등을 주업(主業)으로 하면서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2. 그 밖의 등록차량 : 제1호에 따른 주기적 방문차량(이하 “주기적 방문차량”이라 한다) 외의 차량
- ③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 3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

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즉시 또는 1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산 관련 행정정보 시스템(이하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구분에 따라 이를 즉시 첨부하거나 1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기적 방문차량 : 등록신청 시 즉시
2. 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등록차량(이하 “그 밖의 등록차량”이라 한다) : 등록 후 1년 내

제20조의4(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를 발급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전국적 차원의 가축방역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 및 손상된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20조의5(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①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시설출입차량 앞면에 장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검사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호의 경우 모두 최초 등록일부터 4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주기적 방문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제20조의3에 따른 차량등록 전 6시간
2. 그 밖의 등록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제20조의3에 따른 차량등록 후 1년 내 6시간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결과를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7(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①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8(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 ① 검역검사본부장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위치정보, 방문일시 등의 차량 출입정보를 수집·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적 차원의 가축방역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특별자치도 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이동승인 신청)

-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한다.
 - 1.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제22조의3(일시 이동중지 명령)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유형의 구제역
 -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 ② 법 제1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이동승인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한다.
 - 1. 원유 및 사료의 보관·공급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 2. 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 3. 그 밖에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 시설출입차량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미리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지역
 - 3. 대상 가축·사람 또는 차량

- 4. 기간
- 5. 그 밖에 이동중지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제1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의3제4호 중 “수출 검역물 운송 통보서(신청서)”를 “수출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의7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신설 2012. 9. 7>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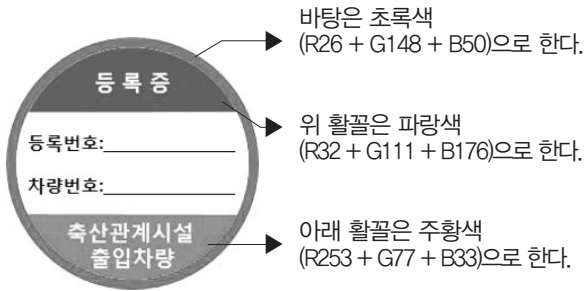
차량 유형	등록대상 차량
1. 가축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2. 원유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의 원유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3. 동물(의)약품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배달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4. 사료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료(단미사료는 제외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5. 가축분뇨운반	가. 분뇨 :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나. 액비 :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6. 왕겨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왕겨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량

7. 퇴비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8. 진료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가축을 진료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9. 인공수정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인공수정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0. 컨설팅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컨설팅 및 지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11. 시료채취, 방역	가. 시료채취 : 법 제7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방역 :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방제차량과 가축전염병별 방역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2. 기계수리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착유시설의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별표 2의3] <신설 2012.9.7>

시설출입차량 등록마크 (제20조의4제1항 관련)

1. 시설출입차량 등록마크



바탕은 초록색 (R26 + G148 + B50)으로 한다.

위 활꼴은 파랑색 (R32 + G111 + B176)으로 한다.

아래 활꼴은 주황색 (R253 + G77 + B33)으로 한다.

35칸(스페이스-약 5cm)으로 한다. “등록번호”와 “차량번호” 단어는 줄을 바꾼다. 글자는 등록마크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다.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의 글자체는 맑은고딕체 + 20 font + 흰색으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축산관계시설”과 “출입차량” 단어는 줄을 바꾼다. 글자는 아래 활꼴의 중앙에 위치한다.

라. 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왼쪽 그림)
마. 초록색 바깥쪽 원의 지름은 8cm(백상지 120g/m²)로 하고, 안쪽 원의 지름은 7.5cm로 한다.

바. 위아래 활꼴의 현의 길이는 6.7cm로 한다.

2. 도안요령

가. “등록증”의 글자체는 맑은고딕체 + Bold + 20 font + 흰색으로 한다. 글자 간격은 1칸(스페이스)으로 한다. 글자는 위 활꼴의 중앙에 위치한다.

나. “등록번호 : /차량번호 : ”의 글자체는 맑은고딕체 + Bold + 12 font + 검정색으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밑줄의 길이는

3. 표시사항

가. 등록번호 : 시설출입차량 등록번호를 적는다.

나. 차량번호 : 소유주가 신청한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를 적는다.